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52739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한혜윤, 이선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6,27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5. 접수 제216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8. 3. 9.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또는 D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 2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2. 3.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② 2020. 3. 2.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또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5. 3.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손해금률(2020. 6. 24.부터 현재까지 연 7%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4. 3. 소외 은행들에 대한 위 각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6. 24. 제1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7,055,6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0. 7. 22. 제2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에 50,310,1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20. 2. 5. 피고 회사 대표자인 C의 아들인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5. 접수 제216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 합계 66,270,9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위변제일인 202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2.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0. 6.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최종 대위변제일인 2020. 7. 22. 이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시인 2020. 2. 5.경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제1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불과 2달이 채 경과하기 전인 2020. 4. 3. 피고 회사는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나아가 2020. 6. 24.경 실제로 원고가 소외 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205,000,000원)을 유일하게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중소기업은행(E회사가 승계하였음)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피고에 대한 38,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무, 임차권자인 F에 대한 4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 원고에 대하여 17,055,658원 상당의 구상금채무 등 합계 215,055,658원 이상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G의 아들인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약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합계 38,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며, 당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면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H에 있는 I건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9층 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2층 365.27㎡

지1층 402.539㎡

1층 356.102㎡

2층 254.908㎡

3층 254.908㎡

4층 254.908㎡

5층 254.908㎡

6층 269.912㎡

7층 308.784㎡

8층 308.784㎡

9층 308.784㎡

10층 308.784m²

11층 308.784m²

12층 308.784m²

13층 308.784m²

14층 258.222m²

15층 258.222m²

16층 258.222m²

17층 250.539m²

18층 250.539m²

19층 250.539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6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4.671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송파구 H 대 661.2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661.2분의 2.895. 끝.

